

# 부전공 운영규정

□ 제정 : 1998. 03 .02

□ 개정 : 2007. 10 .06

□ 개정 : 2011. 10 .01

□ 개정 : 2017. 05 .01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학칙 제54조 및 동 시행세칙 제65조의 부전공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이수학과)** 부전공은 본 대학 해당 학년에 설치되어 있는 학과 중에서 제1전공에 관계없이 하나를 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.

**제3조(이수자격)** 부전공 이수자격은 주전공을 마칠 때까지 취득성적 평점평균이 2.50(C+)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이수학점)** 부전공 학점은 부전공 학과의 전공과목 21학점 이상을 선택하여 이수하되 따로 부전공 지정과목이 있는 학과는 그 과목을 이수하여야만 한다.

**제5조(이수방법)** ①부전공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학년 1학기(3학기) 수강신청 기간중에 부전공이수신청서(별첨서식1)를 학적과에 제출하고, 부전공 과목을 이수한다.

②부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자는 제4학년 2학기(8학기) 수강신청 기간중에 별첨서식(2)에 따라 부전공이수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.

**제6조(이수변경)** 부전공과목 21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,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하여 졸업학점에 계산한다.

**제7조(학위수여)** 부전공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시 학위증서에 부전공 이수 관계의 사실을 기입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